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99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김준혁・이기헌・임오경

김병주 • 모경종 • 박희승

권칠승 • 이수진 • 김동아

김태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 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 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법률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다음 각 호에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12세 이상 15세 미만: 1일에 6시간, 1주일에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휴식시간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1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9세 이상 12세 미만: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3. 6세 이상 9세 미만: 1일에 4시간, 1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4. 2세 이상 6세 미만: 1일에 3시간, 1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5. 2세 미만: 1일에 2시간, 1주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역제공 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제2항의"를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
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	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	
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u>1주일</u>	<u>다음</u>
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u>각 호에 따른다</u> .
<u><신 설></u>	<u>1. 12세 이상 15세 미만: 1일에</u>
	<u>6시간, 1주일에 30시간을 초</u>
	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
	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
	(휴식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일에 10시간을 초과
	<u>하지 못한다.</u>
<u><신 설></u>	2. 9세 이상 12세 미만: 1일에
	<u>5시간, 1주일에 25시간을 초</u>
	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
	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u>다.</u>
<u><신 설></u>	<u>3. 6세 이상 9세 미만: 1일에 4</u>
	시간, 1주일에 20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
	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 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대중문 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이 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 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 <u>일 1시간 1주일에</u> 6시간을 한 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일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 4. 2세 이상 6세 미만: 1일에 3 시간, 1주일에 15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용역제 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 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 5. 2세 미만: 1일에 2시간, 1주 일에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이 경우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4시간 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문화예술용역 제공) ① -----

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 고, 용역제공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은 1일에 10시간을 초과하 지 못한다. 다만, 용역제공 시 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 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관련 시정조치) ①·② (생 략)

<신 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 9. (생략) ② ~ ④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 자가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 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 <u>야</u>한다.

제41소(과대료) ①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6.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 7. ~ 9.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